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93
----------	-------

발의연월일 : 2026. 6. 29.

발 의 자 : 이정현·허성무·박홍배
강준현·조인철·박선원
김우영·김 현·손명수
정혜경·이훈기·정춘생
이주희·최혁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1.0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고, 2025년 잠정 합계출산율은 0.8명 수준으로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놓여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정책에서 다자녀가족을 우대하거나 요금 감면 등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다자녀가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제도별, 지역별로 정책 대상이 상이한 문제가 있음.

이에 다자녀가족을 정의하고 다자녀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및 제10조의2 신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자녀가족”이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가족을 말한다.

제2장제1절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다자녀가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가족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거, 교육, 의료, 취업·창업, 문화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2.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3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다자녀가족”이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가족을 말한다.</u></p> <p><u>제10조의2(다자녀가족에 대한 지원)</u> ①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가족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거, 교육, 의료, 취업·창업, 문화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